

<p>있는 자(주택대상자)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임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'98.9.21 입법예고하고, 기관, 법인, 개인 등으로부터 세출을 받아 상기 관계법령에 근거한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입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</p> <p>-제12조(공급규정의 준수의무 등)제1항의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한 것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사항으로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.</p> <p>-그러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공급사업본부 인력에 대한 인계인수 여부, 고용승계, 신분보장, 퇴직금 정산등 제반사항은 신중한 처리로 민원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이며</p> <p>-아울러 민간위탁 실행을 위한 수탁자 선정, 운영방안, 조직과 인력 등은 경영의 효율성 극대화와 사업의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·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.</p>	<p>○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)</p>
<p>6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	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
<p>의안 번호 95</p>	<p>1998. 10. 기획경제위원회</p>
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8년 10월 2일, 서울특별시장</p> <p>나. 회부일자 1998년 10월 2일</p> <p>다. 상정일자 제10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(1998년 10월 19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 보고</p> <p>제109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(1998년 10월 21일) 질의·답변 토론, 의결</p>	<p>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 : 산업경제국장 신동우)</p> <p>가. 제안이유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“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”를 시행('98.8. 1)한다는 통보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심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의 변동에 따라 도매요금을 연동하는 경우,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.</p>
<p>3. 참고사항</p> <p>1) 관계법규 : 도시가스법 제20조 제20조(가스의 공급규정) ①~②(생략)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,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·도지사에게 공급규정 내용의 변경을 위</p>	<p>4. 질의·답변 : 생략</p>
<p>5. 심사결과</p>	<p>.....</p>

<p>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④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·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동수)</p> <p>○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·관여하는 교통요금, 도시가스요금,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,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, 사용료에 있어 도시가스요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'98.8.1부터 도시가스용 천연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를 시행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소비자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별도의 요금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</p> <p>○ 아울러 위원 중 당연직인 공무원의 직위를 금번·조직개편으로 '98.8.12자 서울특별시 직제규칙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므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.</p> <p>4. 질의·답변 : 생략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○ 원안가결(재적의원 12명, 출석의원 7명 전원일치)</p> <p>6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</p> <p>제3조(업무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이 조례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</p>	<p>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</p> <p>2.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3.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경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</p> <p>4. 한국지역난방공사</p> <p>5.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계·시공한 자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</p> <p>6. 국내외 에너지관련 전문업체 또는 기관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운영·관리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업자</p> <p>7.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</p> <p>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에너지공급시설의 기본설계, 설시설계, 시공 및 감리</p> <p>2.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운영 및 그 시설의 관리</p> <p>3. 시설분담금, 열요금 등의 징수</p> <p>제12조제1항 중 "통상산업부장관"을 "산업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위탁업무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이관시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②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한 업무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</p> <p>.....</p> <p>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
---	--